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

켄코솔라(주)

켄코솔라(주)-대구대학교 업무협약서

한국전력의 켄코솔라(주)와 대구대학교(이하 각 기관을 “당사자”라 함)는 대구대학교 일대의 태양광 발전 공동사업 및 인력양성, 교육연구지원,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의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본 협약”)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확약한다.

제1조 【목적】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정부의 「재생에너지 3020」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「대구대학교 태양광 발전 공동사업」(이하 “본 사업”)의 추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및 관련사업 등의 교육·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협력분야】

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.

1. 대구대학교 캠퍼스 일대의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태양광 발전 공동사업 추진(규모 약 10MW 상당)
2.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및 연구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3.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·연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
4. 신재생에너지 인식개선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
5. 대구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 시 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
6. 켄코솔라(주) Solar School 설립 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
7. 태양광 발전 수익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
8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

제3조 【상호협약】

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 【협약의 해지】

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5조 【유효기간】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태양광 발전 공동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다.

제6조 【비밀 및 보안유지】

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문서 등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호 간 공동사업 추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다.

제7조 【기타사항】

본 협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과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합의 하에 처리하고 사업 착공 전에 각 당사자는 별도 계약(협약)을 체결하기로 한다.

제8조 【협약서 보관】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3월 3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대구대학교 총장

김 상 호

김상호



케코솔라(주) 대표

하 봉 수

하봉수